자율안전확인신고 수행계획서

2022.





[목차] —

| 1. |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. |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목적 | 4 |
| 3. |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범위 | 6 |
| 4. | | 10 11 11 |
| 5. | | 13 14 15 |

1. 자율안전확인 대상품

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의 개요



| 순번 | 대상품(중) | 대상품(소) | 용량단위 | 구분(형식)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연삭기 | kW | |
| 1 | 연삭기 또는 연마기 | 연마기 | kW | |
| 2 | 산업용 로봇 | 산업용 로봇 | Axis | |
| 3 | 혼합기 | 혼합기 | kW | |
| 4 | | 파쇄기 | 1. /1 | |
| 4 | 파쇄기 또는 분쇄기 | 분쇄기 | kg/h | |
| | | 파쇄기 | kW | |
| _ | 시프기고오기계 | 절단기 | kW | |
| 5 | 식품가공용기계 | 혼합기 | kW | |
| | | 제면기 | kW | |
| 6 | 컨베이어 | 컨베이어 | kg/h | |
| 7 |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|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| Ton | |
| | | 선반 | kW | |
| | | 드릴기 | kW | |
| 8 | 공작기계 | 평삭기 | kW | |
| | | 형삭기 | kW | |
| | | 밀링기 | kW | |
| | | 둥근톱 | kW | |
| | | 대패 | kW | |
| 9 |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| 루타기 | kW | |
| | | 띠톱 | kW | |
| | | 모떼기 기계 | kW | |
| 10 | 인쇄기 | 인쇄기 | 도 | |

2.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목적

자율안전확인인고 제도



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(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제도

표 법잭근거
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(자율안전확인의 신고) ~ 제92조(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·수입·사용등의 금지 등)
- ▶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0호)
- ▶ 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37호)

밸식 및 과태료

| 위반행위 | 벌칙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,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,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·기구 등을 제조·수입·양도·대여·사용하거나 양도·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 |
|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| |
|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한 경우 |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 |
|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| | |

[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, 제171조]
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(만원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|
| ਸਦਲਜ | 근거 립소문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 | |
|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| 법 제175조제5항제1호 | 50 | 250 | 500 | |
| 를 하지 않은 경우(자율안전확인대상별) | 를 제1/2조제2용제1호 | 50 | 230 | 300 | |
| 법 제1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기준에 |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| 30 | 150 | 300 | |
| 맞는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ㅁ MILL2도MIO용제10호 | 30 | 130 | 300 | |
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]



3.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범위

자율안전약인 대상품



| 구 분 | 대상품 | | | | |
|---------|-------|---|--|--|--|
| 위험기계·기구 | (10종) |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(휴대형은 제외)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(파쇄・절단・혼합・제면기만 해당)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공작기계(선반, 드릴기, 평삭・형삭기, 밀링만 해당)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(둥근톱, 대패, 라우터, 띠톱, 모떼기 기계만 해당) ⑩인쇄기 | | | |
| 방호장치 | (8종) | ①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롤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 덮개 ⑤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 방장치 ⑥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추락·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(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) | | | |
| 보호구 | (3종) | ①안전모(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) ②보안경(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) ③보안면(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) | | | |

대상품별 적용범위



◎ 위험기계·기구

| 번호 | 대상품 |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연삭기 또는 연마기 (휴대형은 제외) |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·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|
| 2 | 산업용 로봇 |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(엑츄에이터,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)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 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|
| 3 | 혼합기 |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가.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나.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다.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라. 식품용 |
| 4 | 파쇄기 또는 분쇄기 |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. 식품용 나.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|
| 5 | 식품가공용기계 (파쇄·절단·혼합·제 면기) | 가. 식품파쇄기: 채소, 육류,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. 다만,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) 구동모터의 용량이 1.2킬로와트 이하인 것 2)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. 식품절단기: 채소, 육류,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) 구동모터의 용량이 1.2킬로와트 이하인 것 2)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. 식품혼합기: 채소, 육류,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. 다만,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)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) 구동모터의 용량이 1.2킬로와트 이하인 것 3)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. 제면기: 밀가루,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) 구동모터의 용량이 1.2킬로와트 이하인 것 2)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1) 구동모터의 용량이 1.2킬로와트 이하인 것 2)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|

| 번호 | 대상품 |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|
|----|--|--|
| 6 | 컨베이어 | 재료·반제품·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. 다만,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.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. 롤러 컨베이어 다. 트롤리 컨베이어 라. 버킷 컨베이어 마. 나사 컨베이어 |
| 7 |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|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|
| 8 | 공작기계 (선반, 드릴기, 평삭·형삭기, 밀링기) | 가. 선반: 회전하는 축(주축)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. 드릴기: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. 평삭기: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공작물을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. 형삭기: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(ram)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수평 또 는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. 밀링기: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 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|
| 9 |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(둥근톱, 대패, 루타기, 띠톱, 모떼기 기계) | 가. 둥근톱기계: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. 기계대패: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,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. 루타기: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, 모떼기,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. 띠톱기계: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. 모떼기기계: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, 곡선절삭,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|
| 10 | 인쇄기 |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, 필름,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. 이 경우, 절단기, 제본기,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|

⊚ 방호장치

| 번호 | 대상품 |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| | | | | |
|----|--|---|--|--|--|--|--|
| 1 |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|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| | | | | |
| 2 |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| 교류아크용접기(엔진 구동형 포함)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| | | | | |
| 3 | 롤러기 급정지장치 | 고무,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| | | | | |
| 4 | 연삭기 덮개 | 연삭숫돌의 덮개. 다만,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| | | | | |
| 5 | 목재가공용 둥근 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|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| | | | | |
| 6 | 동력식 수동대패 용 칼날접촉방지 장치 |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| | | | | |
| 7 |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|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| | | | | |
| 8 | 추락·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| 추락·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. 선반지주 나. 단관비계용 강관 다. 고정형 받침철물 라. 달비계용 및 부재(달기체인 및 달기틀) 마. 방호선반 바.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. 측벽용 브래킷 | | | | | |

⊚ 보호구

| 번호 | 대상품 |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|
|----|-----|--|
| 1 | 안전모 |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|
| 2 | 보안경 |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|
| 3 | 보안면 |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|

4.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흐름 및 세부계획

I 자율안전확인인고의 흐름도



연장 미팅



위엄성평가



전기안전시엄

(주)세이프어스 ⇒ 신고인

(주)세이프어스

(주)세이프어스



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

안전보건공단 ⇒ 신고인



신고내용 확인



서류작성 및 신고서 제출

안전보건공단

(주)세이프어스 ⇒ 안전보건공단

п

세부계왹



① 현장미팅

▶ 처리기한 : 1일

▶ 내용 : 현장 필요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

2 위험성평가

▶ 처리기한 : 1일

▶ 내용 : 신고 대상품 형식별 위험성 평가 실시

③ 전기안전시험

▶ 처리기한 : 1일

▶ 내용 : 내전압시험, 절연저항시험, 접지연속성시험, 잔류전압시험 실시

④ 서류작성 및 신고서 제출

▶ 처리기한 : 7일

▶ 내용 :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서류작성 대행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 제출

5 신고내용 확인

▶ 처리기한 : 15일

▶ 신고수리기관

- 위험기계·기구 :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

- 방호장치 및 보호구 : 산업안전보건인증원

⑤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

▶ 내용 :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, KCS스티커 발급은 별도(자체제작)

기 참고사항

▶ 내용 : ① ~ ④ 항목의 처리기한은 신고 대상품의 형식 및 종류,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신고서 제출 시 신고 대상품의 방호장치 설치상태가 부적절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품에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.

▶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서류작성 일체와 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 교부까지의 용역임.

5. 첨부서류

자율안전확인 신고서

| | 사업장명 | | | | | 사업장관리번호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|---|
| | 사업자등록번호 | 2 | | | | 전화번호 | | |
| اماتاما | 소재지 | | | | | | | |
| 신청인 | 대표자 성명 | | | | | | | |
| | | 성명 | | | | 휴대전화번호 | | |
| | 담당자 | 전자우편 주소 | | | | | | |
| 자율안전확인 | [대상 기계·기 | 기구명 | | | | | (국내플 | 품, 수입품) |
| 형식(규격) | | | | 용량(등급) | | | (| <u>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</u> |
| 제조자 • 소 | <u>-</u> 재지 | | | | | | | |
| 「산업안전 신고합니다. | 보건법」 제89 |)조 및 같은 [| 법 시행규칙 | 제120조제1항에 | 따라 | 자율안전기준에 | 적합한 | 제품임을 |
| | | | | | | 년 | 월 | 일 |
| | | | | 신청인 | | | (人 | 너명 또는 인) |
| 자율안전 | <u></u> 확인기관의 | 장 귀하 | | | | | | |
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제품의 설명서 2.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| 수수료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|
| 담당 직원 확인 사항 | 1. 법인: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. 개인: 사업자등록증 | 없음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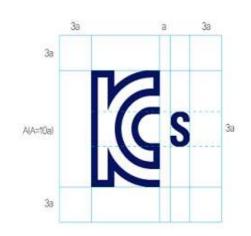
공지사항
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14] [개정 2020.1.16.]

<u>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</u> (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)

1. 표시





2. 표시방법

- 가. 표시는 「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.
- 나.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